[별지 제8호서식] (규칙 제11조제1항 관련) <개정 2025. 2. 20.>

후원회 (변경등록신청)·(변경신고)서

문서번호

구 분		변 경 내 용		변경일자	변경사유
명 칭 (약 칭)					
사무소의 소재지			전 화 번 호		
대 표 자	성 명	(한자 :)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	전 화 번 호		
정관 또는 규약					
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					

「정치자금법」 제7조제4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의 (변경등록신청을)·(변경신고를) 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후원회 대표자 직인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※ 구비서류

1. 정관 또는 규약 1부
2.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
3. 인영서 1부
4. 회의록 사본 1부
5.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

주 1. "변경내용"란에는 기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,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.

2. 후원회 명칭에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"명칭(약칭)"란에는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합니다.

3. 인영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<별지>에 따라 작성합니다.

4. 회의록 사본은 「정치자금법」 또는 정관(규약)의 규정에 의한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의결에 따라 후원회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5. 회의록에는 기록자·확인자의 서명·날인이 있어야 하며,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"원본대조필"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.